

**기업승계 M&A 활성화를 위한
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**

2026년도 기업승계 M&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30일
기술보증기금 이사장

종합컨설팅 공고 변경 내용

- 1) M&A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교섭대상 매칭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**6개월 이내로 확대**

2) 종합컨설팅의 경우 기존에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內 제외대상 수정

→ ⑦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<삭제>

3)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內 제외대상 수정

→ ⑧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M&A지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<삭제>

☐ **(기타 유의사항)** 본 변경내용 외 사항은 최초 공고내용과 동일

☐ **(문의처)** 기술보증기금 M&A지원센터 기업승계M&A지원팀

☎ 02-3215-5916, 5917 / mna@kibo.or.kr

<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(요약) >

컨설팅 유형	신청자 유형	신청조건	지원대상 선정	지원내용
I. 기초컨설팅 * 신청일 기준 M&A 교섭 대상이 없는 잠재수요기업 (총 100개사)	매도희망기업	· 대표자 연령 : 만 55세 이상 · 기업 업력 : 만 5년 이상	· (평가방법) 기업승계를 위한 M&A 여부를 판단하여 “적합” 시 선정	· 컨설팅 비용 지원 (기업당 70만원 한도) ※ 자부담 30% 별도 - 기업소개자료(TM)작성 - 딜구조설계 등
	매수희망기업 (기업승계 희망자)	· 중소기업 인수 희망기업 (개인 또는 법인)	- 평가기준 매도 : 기업승계 여부 등 매수 : 인수추진계획 등	· 컨설팅 비용 지원 (기업당 70만원 한도) ※ 자부담 30% 별도 - 인수대상 기업군 분석 - 자금조달방안 자문 등
II. 종합컨설팅 * 신청일 기준 M&A 교섭 대상이 있는 기업 (총 40개사)	매도희망기업	<신청자를 기준> · 대표자 연령 : 만 55세 이상 · 기업 업력 : 만 5년 이상	<단계 평가> · (1단계) 기초컨설팅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동일하며 “적합” 시 2단계 평가 실시 · (2단계) M&A 교섭 구체성, M&A 후 시너지 등 평가 → 총점 60점 이상 인 기업 중 상위득점순으로 선정 (단 기초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종합컨설팅을 신청한 경우, 총점 70점 이상)	· 컨설팅 비용 지원 (기업당 700만원 한도) ※ 자부담 30% 별도 - 기업가치평가 - 계약서 법률 검토 - 매각조건 및 가격협상 등
	매수희망기업 (기업승계 희망자)	<교섭대상을 기준> · 대표자 연령 : 만 55세 이상 · 기업 업력 : 만 5년 이상		· 컨설팅 비용 지원 (기업당 700만원 한도) ※ 자부담 30% 별도 - 기업실사 - 기업가치평가 - 인수조건 및 가격협상 등

* (교섭) LOI(의향서), NDA(비밀유지서약서), MOU(양해각서) 등 M&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

** 컨설팅 유형에 따라 신청조건, 평가기준,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하실 것

< 사업진행 관련 공통사항 >

☞ 모든 컨설팅은 기술보증기금에 등록된 기업승계 중개기관(신청기업이 3지망까지 희망 중개기관을 선택 가능, 참고1)을 통해서만 진행

[참고] M&A의 유형 및 주요 절차 ※출처: M&A Guide Book(중소벤처기업부, VC협회)

- M&A란 기업의 인수(Acquisition)와 합병(Merger)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대상 기업의 주식, 영업 또는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함으로써 ‘기업에 대한 지배권’ 또는 ‘경영권’의 직·간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.
- 주식인수(지분양수도) : 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
 - 합병 : 복수의 회사가 합쳐지면서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법인에 모든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또는 승계하는 방식
 - 영업양수도 : 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·부채, 인력·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
 - 자산양수도 : 대상기업의 특정자산(부채포함)을 개별적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식

< M&A 주요 절차 >

대상	기초컨설팅		종합컨설팅			
M&A 절차	1단계 매도(매수) 전략 수립	2단계 시장 조사 및 대상기업 탐색·접촉	3단계 <교섭단계> 예비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	4단계 실사 및 기업가치평가	5단계 협상 및 계약 체결	6단계 거래종결 및 인수후 통합
상세 내용	• (매도) 자사 역량 및 잠재 리스크 파악 • (매수) 시너지 창출 분야 탐색	• (매도) 자사 재무 정보, 기본현황 등 기초정보를 담은 Teaser 작성·제공 • (매수) M&A목적, 전략에 맞춰 잠재적 인수대상 회사 탐색	• (매도) NDA체결, 인수의향서(LOI)를 받고 더 많은 정보가 담긴 IM제공 • (매수) 대상기업과 NDA체결 및 LOI 제출 • 매수측과 매도측은 양해각서(MOU) 체결	• 재무, 세무, 법률 실사 등을 통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파악 • 실사에서 발견한 사항을 바탕으로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실시	•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진행 • 주요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	•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 이행 • 대금정산 • 거래종결

I. 기초컨설팅 지원사업

1 사업 개요

□ (사업목적)

- M&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컨설팅 지원

□ (지원규모) 총 100개社 ('26년 예산 : 70백만원)

□ (지원범위) 기업승계 중개기관(동 공고문 참고1)과 총 1백만원 이상* (부가세제외)의 기초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

* 최소 30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

(기업승계 중개기관)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기보와 "기업승계 M&A 지원사업 업무협약"을 체결한 민간 M&A중개기관으로 회계법인, 컨설팅사 등 총 14개사(참고1)

□ (지원한도) 기업당 70만원(부가세제외)

□ (지원항목) 신청유형(매도희망/매수희망)에 따른 구분지원

- (매도희망기업) M&A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
- (매수희망기업) 인수대상 탐색,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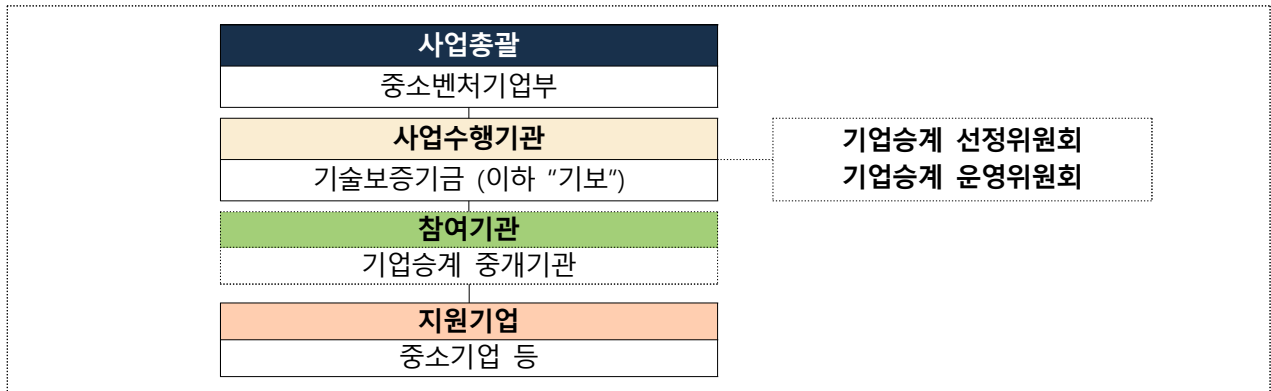
<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>

유형	항목	주요내용
매도 희망	딜구조 설계	주식/영업/자산양수도 등 매도희망기업에 적합한 방법론 자문
	적정시기 발굴	기업 Value(매출액, 영업이익의 추세 기반)상 최적의 매도시기 자문
	지분매각 방법	구주매도/신주발행 등 지분매각 방법 자문
	기업소개자료(TM) 작성	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소개자료 작성 위탁
	마케팅 지원	매도를 위한 IR 및 언론사 홍보 등 지원
매수 희망	적정 인수대상 탐색	인수규모/업종/주제품 등을 고려하여 인수대상 탐색 및 추천
	자금조달 컨설팅	공동투자, 대출, 보증, BW발행 등 자금조달방안 자문

2

추진체계

□ (사업추진 체계도)



- 사업총괄 :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(중소벤처기업부)
- 사업수행기관 : 사업 운영,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,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, 성과관리 등 (기보)
- 기업승계 중개기관 : 선정기업 대상 기초 컨설팅 제공 등

3

지원 세부내용

□ **(지원대상)** M&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(매도희망기업)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(매수희망기업)

□ **(신청자격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*

*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

○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

－ (매도희망기업) 대표자* 연령**이 55세 이상이며, 업력**이 5년 이상일 것

*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,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

** 연령,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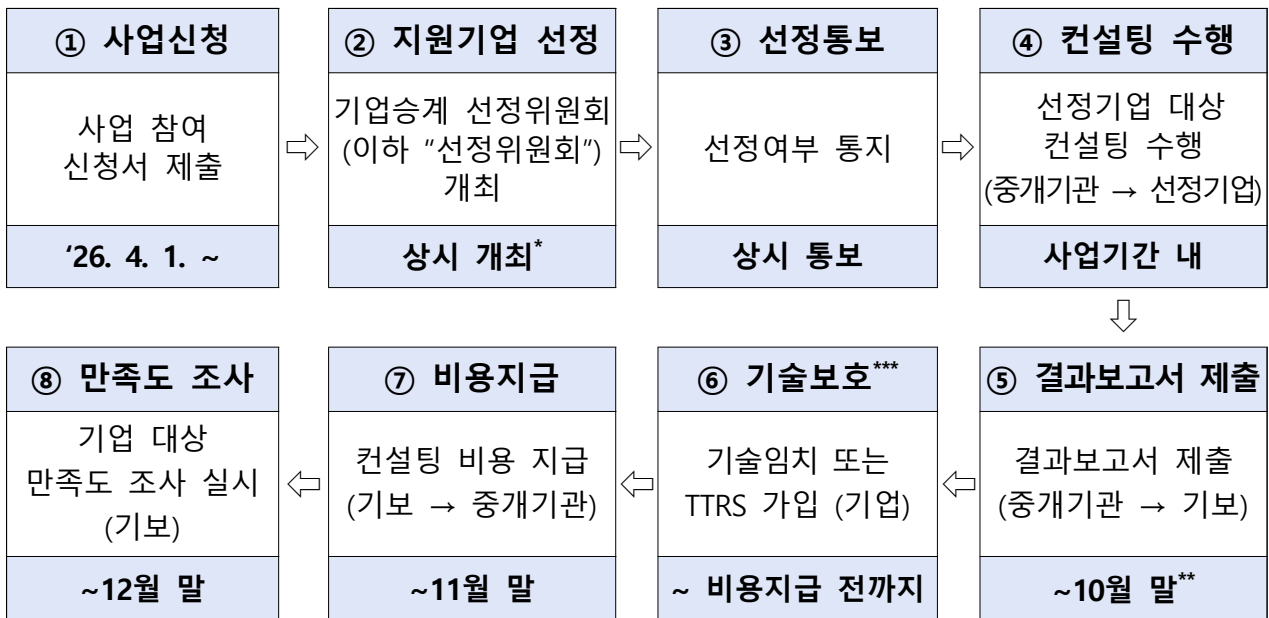
－ (매수희망기업)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를 검토 중일 것

- **(제외대상)** 신청기업(또는 대표자)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

- ① 지원제한 대상업종(도박게임, 사치향락, 부동산 등)인 경우
- ② 휴·폐업 중인 경우
- ③ 국세, 지방세 등 조세 체납중인 경우
- ④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
- ⑤ 현재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
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- ⑥ 제출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- ⑦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
- ⑧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의 M&A자문·중개계약
또는 회계법인 등과의 매각주관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
- ⑨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4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

□ (지원절차)



*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(신청기업에 별도 통보)

**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,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

***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(기술임치 또는 TTRS)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,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

5 선정평가 절차

- **(평가방법)** 기보 내·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
 - (선정기준)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
 - － (매도희망기업)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선정
 - － (매수희망기업)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선정

평가항목	평가지표		적합 여부
	매도희망기업	매수희망기업	
사업 목적 부합성	• 기업승계 적합성 (신청배경, 친족후계 유무 등)	• 기업승계 적합성 (신청배경, 대표자 경력 등)	여 / 부
	• 기업승계 의지 및 적극성 (희망사유, 향후계획 등)	• 기업승계 이후 경영 의지 (희망사유, 향후계획 등)	여 / 부
M&A 추진 가능성	• 기업승계 성공 가능성 (업력, 업종, 재무현황 등)	• 자금조달 가능성 (업력, 업종, 재무현황 등)	여 / 부

- (우선순위) 선정평가 결과, 지원규모(100개사) 초과 시 선정기준*

* ① 매수측(기업승계희망자) 우선선정 → ② 매도측 대표자 연령順 선정 → ③ 매도측 기업의 경영기간(업력)順 선정

- **(선정통보)**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(영업일기준) 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

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**(공고기간)** '26. 3. 25.(수) ~ 예산 소진시 까지
- **(신청기간)** '26. 4. 1.(수) ~ 예산 소진시 까지
- **(신청방법)** 스마트 테크브릿지(tb.kibo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등 확인

- 스마트 테크브릿지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

② 신청서 등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
- (신청경로) 스마트 테크브릿지 > 신청 및 공모 > 기업승계 M&A 지원사업 >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>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> "신청"
- (제출서류)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은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스캔본 업로드

③ 유의사항

- 전자서명(공동인증서 등)을 통해 "기업, 대표자 정보이용동의" 필수
 ※ 공동대표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동의서 원본은 별도 우편제출
- 접수 마감일 이후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, 반드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

□ (제출서류)

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

연번	서식명
1	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1)
	○ 법인기업: 법인인감 날인 / ○ 개인기업: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
2	정보이용동의서 (서식2)
	○ 기업정보: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○ 개인정보: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 ※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/개인 인감 날인 필요
3	확약서 (서식3)
	○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

나 첨부서류

연번	서식명
1	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(법인기업만 제출)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2	사업자등록증명원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

연번	서식명
3	중소기업 확인서
	○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
4	국세 납세증명서
	○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5	지방세 납세증명서
	○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6	4대보험 완납증명원
	○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7	'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
	○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분) 제출 ※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
8	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9	주주명부 (법인기업만 제출)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10	'25년 감사보고서 (외부감사 기업만 제출)
	※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(서식2)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 하고 원본은 제출처*로 우편송부 하실 것 * 제출처: (0734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, 63스퀘어 41층 M&A지원센터

7

유의사항

- ☐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
- ☐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, 신청접수·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
- ☐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- ☐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함

구분	내용
상한제	기업승계 중개기관별 사업수행 기간에 최대 수행할 수 있는 기초컨설팅 건 수는 당해연도 기초컨설팅 지원건 수의 40%를 넘지 않는다.

- ☐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기초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 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
- ☐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,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☐ 신청기업의 사정(기업의 확인 지연, 연락 두절)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☐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,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,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☐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·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☐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, 이력관리,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8

문의처

- ☐ **(사업 문의처)** 기술보증기금 M&A지원센터
☎ 02-3215-5917, 5999, 5995 / mna@kibo.or.kr
- ☐ **(온라인 신청 문의처)**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
☎ 051-606-7429, 7431, 7699

II. 종합컨설팅 지원사업

1 사업 개요

□ (사업목적)

- 기업승계 목적의 M&A 활성화를 위해 M&A 교섭을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지원

□ (지원규모) 총 40개社 ('26년 예산 : 280백만원)

□ (지원방법) 기업승계 중개기관(동 공고문 참고1)과 총 1천만원이상(부가세 제외)의 종합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

* 최소 3백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

(기업승계 중개기관)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기보와 "기업승계 M&A 지원사업 업무협약"을 체결한 민간 M&A중개기관으로 회계법인, 컨설팅사 등 총 14개사(참고1)

□ (지원한도) 기업당 7백만원(부가세제외)

□ (지원내용) 신청유형(매도희망/매수희망)에 따른 구분지원

- (매도희망기업) 기업실사,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
- (매수희망기업) 인수가격협상,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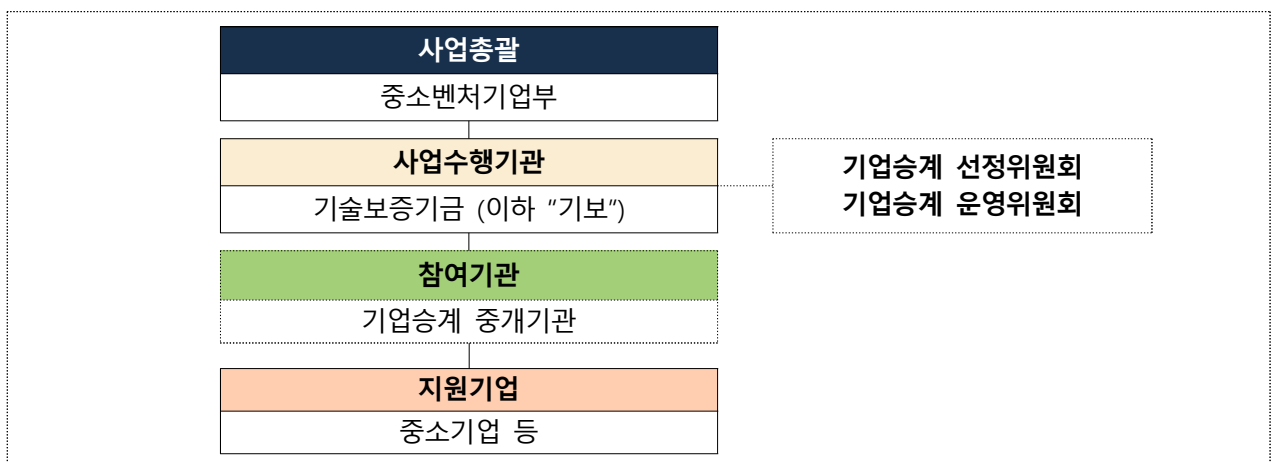
<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>

유형	항목	주요내용
매도 희망기업	기업실사 지원	매도기업의 기업실사(회계, 법률, 세무 실사 등)지원
	기업가치평가	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
	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	적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전략 지원
	계약서 검토	MOU,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
	기술보호지원	M&A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탈취예방 지원
	M&A관련 자문	기타 M&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,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

유형	항목	주요내용
매수 희망기업	인수조건 및 인수가격 협상	기업 자금조달능력에 적절한 인수가격 협상 전략 자문
	기업실사 지원	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사비용(회계, 법률, 세무 실사 등) 지원
	기업가치평가	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
	계약서 검토	MOU,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
	인수후 PMI	인수합병 완료 후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(조직, 시스템 및 프로세스, 기업 문화 등)
	M&A관련 자문	기타 M&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,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

2 추진체계

□ (사업추진 체계도)



- 사업총괄 :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(중소벤처기업부)
- 사업수행기관 : 사업 운영,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,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, 성과관리 등 (기보)
- 기업승계 중개기관 : 선정기업 대상 종합컨설팅 제공 등

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

- (지원대상) M&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(매도희망기업)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(매수희망기업)

- **(신청자격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*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M&A 교섭** 대상이 매칭된 기업

*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

** (교섭) LOI(의향서), NDA(비밀유지서약서), MOU(양해각서) 등 M&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

○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

- － (매도희망기업) 대표자* 연령**이 55세 이상이며, 업력**이 5년 이상일 것

*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,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

** 연령,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

- － (매수희망기업) 교섭 대상 기업이 매도희망기업 기준*을 충족할 것

*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, 업력이 5년 이상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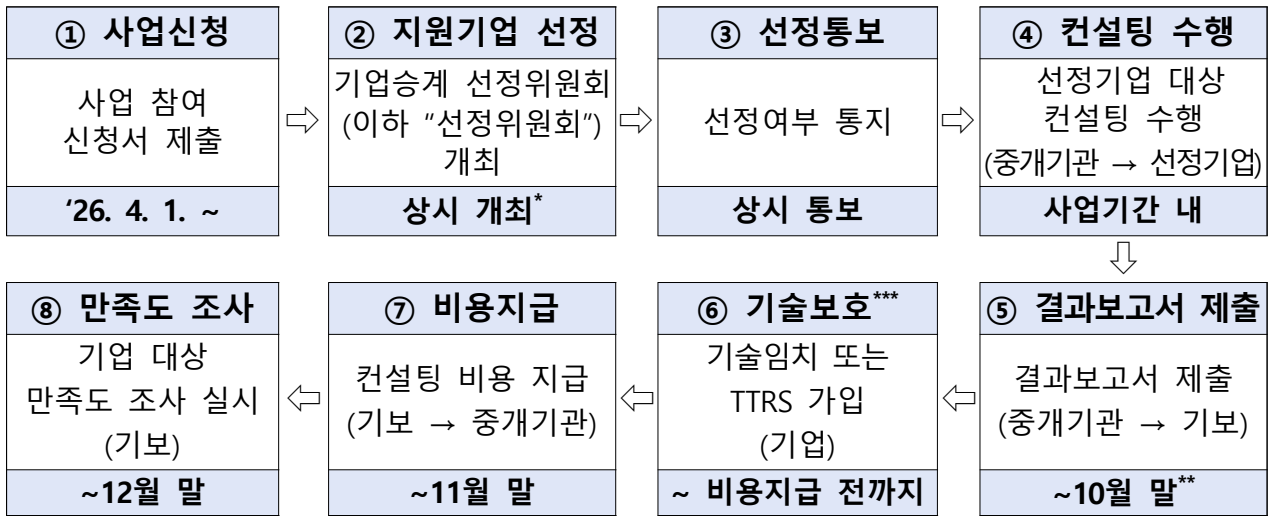
- **(제외대상)** 신청기업(또는 대표자)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

- ① 지원제한 대상업종(도박게임, 사치향락, 부동산 등)인 경우
- ② 휴·폐업 중인 경우
- ③ 국세, 지방세 등 조세 체납중인 경우
- ④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
- ⑤ 현재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- ⑥ 제출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- ⑦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4

지원절차 및 지원내용

□ (지원절차)



*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동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(신청기업에 별도 통보)

**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,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

***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(기술임치 또는 TTRS)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,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

5

선정평가 절차

□ **(평가방법)** 기보 내·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(2단계) 실시

○ (1단계 선정기준)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

－ (매도희망기업)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

－ (매수희망기업)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

평가항목	평가지표		적합 여부
	매도희망기업	매수희망기업	
사업 목적 부합성	• 기업승계 적합성 (신청배경, 친족후계 유무 등)	• 기업승계 적합성 (신청배경, 대표자 경력 등)	여 / 부
	• 기업승계 의지 및 적극성 (희망사유, 향후계획 등)	• 기업승계 이후 경영 의지 (희망사유, 향후계획 등)	여 / 부
M&A 추진 가능성	• 기업승계 성공 가능성 (업력, 업종, 재무현황 등)	• 자금조달 가능성 (업력, 업종, 재무현황 등)	여 / 부

- (2단계 선정기준) **종합평점 60점 이상**인 기업 중에서 종합평점 상위 순서를 반영하여 순차대로 최종 선정(**단, 기초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종합컨설팅을 신청한 경우, 종합평점 70점 이상**)

평가항목	평가지표		배점
	매도희망기업	매수희망기업	
M&A 교섭 구체성	• M&A 교섭 진행단계(교섭진척도, 실사 전략 수립 준비도 등) • M&A 조건 협의 수준(가격, 구조 등)		40
M&A 이후 시너지	• 매도희망기업 역량 (업종, 업력, 인력보유현황 등)	• 매수희망기업 역량 (경력, 재무 등) • 기업 지속 및 성장가능성 (업종, 업력 등)	30
M&A 성사 가능성	• 재무건전성 (투명성 임직원 협조 가능성 등)	• 자금조달 계획 실현가능성 (구체성, 현실성 M&A경험 등)	30
합계			100

< 종합평점 산출방법 >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2단계 서면평가 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위원 수} - 2}$$

- **(선정통보)**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(영업일기준) 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

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**(공고기간)** '26. 3. 25.(수) ~ 예산 소진시 까지
- **(신청기간)** '26. 4. 1.(수) ~ 예산 소진시 까지
- **(신청방법)** 스마트 테크브릿지(tb.kibo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등 확인

- 스마트 테크브릿지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

② 신청서 등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
- (신청경로) 스마트 테크브릿지 > 신청 및 공모 > 기업승계 M&A 지원사업 >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>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> "신청"
- (제출서류)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은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스캔본 업로드

③ 유의사항

- 전자서명(공동인증서 등)을 통해 "기업, 대표자 정보이용동의" 필수
 ※ 공동대표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동의서 원본은 별도 우편제출
- 접수 마감일 이후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, 반드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

□ (제출서류)

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

연번	서식명
1	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4)
	○ 법인기업: 법인인감 날인 / ○ 개인기업: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
2	정보이용동의서 (서식5)
	○ 기업정보: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○ 개인정보: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 ※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/개인 인감 날인 필요
3	확약서 (서식6)
	○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(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)

나 첨부서류

연번	서식명
1	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(법인기업만 제출)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
2	사업자등록증명원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
3	중소기업 확인서
	○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※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
4	국세 납세증명서
	○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5	지방세 납세증명서
	○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6	4대보험 완납증명원
	○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
7	'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
	○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분) 제출 ※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
8	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9	주주명부 (법인기업만 제출)
	○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10	'25년 감사보고서 (외부감사 기업만 제출)
11	M&A교섭 상대 매칭 관련 증빙서류(MOU, NDA, LOI 사본 등)
	○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의 날인 필수
※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(서식5)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 하고 원본은 제출처*로 우편송부 하실 것 * 제출처: (0734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, 63스퀘어 41층 M&A지원센터	

- ☐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
- ☐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, 신청접수·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
- ☐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☐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

구분	내용
상한제	기업승계 중개기관별 사업수행 기간에 최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 건 수는 당해연도 종합컨설팅 지원건 수의 40%를 넘지 않는다.

- ☐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종합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 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
- ☐ 매칭된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이 동시에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, 매수희망기업을 우선으로 지원 예정
- ☐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,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☐ 신청기업의 사정(기업의 확인 지연, 연락 두절)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☐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·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☐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,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,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☐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, 이력관리,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8

문의처

- ☐ **(사업 문의처)** 기술보증기금 M&A지원센터
☎ 02-3215-5917, 5999, 5995 / mna@kibo.or.kr
- ☐ **(온라인 신청 문의처)**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
☎ 051-606-7429, 7431, 7699

참고1**기업승계 중개기관 현황**

순번	기관명(가나다순)	기관유형	본사 소재지
1	법무법인 디엘지	법무법인	서울
2	(주)디유평트너스	컨설팅사	서울
3	(주)딥서치	컨설팅사	서울
4	모멘스투자자문(주)	컨설팅사	서울
5	(주)브릿지코드	컨설팅사	서울
6	삼덕회계법인	회계법인	서울
7	삼일회계법인	회계법인	서울
8	(주)엠엔에이코리아	컨설팅사	서울
9	(주)엠애피	컨설팅사	서울
10	인터캐피탈파트너스(주)	컨설팅사	서울
11	(주)제타플랜인베스트	투자기관	서울
12	(주)한국법인거래소	컨설팅사	서울
13	한국M&A거래소(주)	컨설팅사	서울
14	한영회계법인	회계법인	서울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부당개입 주요유형	
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	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	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③ 허위 대출 약속	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④ 정부기관 등 사칭	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
⑤ 부정청탁	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
⑥ 계약불이행	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<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> (기관별 작성 필요)

- (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) <https://ols.semas.or.kr>
- (콜센터) 1533-0100
- (현장접수)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